즉시접수	당일접수	기 (10년 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
		ac.or.kril
제출자		www.klc
총	 건	[ - and country of the Property of the Section (

# 지역권변경등기신청

-7)	٤		년	월	일	-1	ام دا	ijo	기관	확인		각종	통지
접 -	수	제			호	]저	리 인						
	부동산의 표시												
	승역	역지 :	:										
	요'	역지 :	:										
1	اماما	1-1 -	. دم	ሳ) ላ)				0)	۸۱				
		]과 그					년 	월	일				
0	/  ·	의 돌	누 스	i									
변경	할	사항	및	범위									
구분		성 (상호		명 칭)			민등록 기용등	두번호 록번호)		주	소 (	소 재	지)
등 기 의 무 자													
등 기 권 리 자													



등 록 면 허	세	금					원
지 방 교 육	세	금					원
세 액 합	계	금					원
		금		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	료	납부번호	<u> </u>				
		일괄납부	<u> :</u>		건		원
	등	기의무자의	의 등기필	정보	-		
부동산고유번호							
성명(명칭)		일련	번호		日	미밀번호	
		철 부	서	면			
·지역권변경계약서 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 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된 ·위임장 ·등기필증 ·도면(토지의 일부인 경	필확역	통 통 통 통 통 통	(기 타)	>			
		년	월	C	<u> </u>		
위 신청인				(1) (1)	(전화 : (전화 :	)	
(또는)위 대리인				(전화:	)		
지방	법원					귀중	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 지역권변경등기신청

	,	년	월 일	-1 1 .1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ই	처 리 인		

## ① 부동산의 표시

승역지: **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** 

대 300m²

요역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

대 300m²

[등록문서번호: 100번]

이 상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4월 3일	변경계약				
③ 등	등기의 목적	지역권변경					
<b>④</b> 변	년경할 사항 및 범위	2017년 3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등기한 지역권 등 기사항 중 범위 "동측 50㎡"를 "동측 80㎡"로 변경	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(소재지)				
<ul><li>⑤ 등 기 의 무 자</li></ul>	이 대 백	700101-1234567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(서초동)				
⑥   등   기권리자	김 갑 동	801231-1234567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, 가동 101호(서초동, 샛별아파 트)				



⑦ 등 록 면 허 세	금	<b>6,000</b> 원		
⑦ 지 방 교 육 세	급	<b>1,200</b> 원		
8 세 액 합 계	급	<b>7,200</b> 원		
	금	<b>3,000</b> 원		
⑨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 : 12-12-12	345678-0		
	일괄납부: 건	원		
(0)	)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.	보		
부동산고유번호	1102-200	6-002095		
성명(명칭)	일련번호	비밀번호		
이대백	A77C-LO71-35J5	40-4636		
11	) 첨 부 서 '	 면		
·지역권변경계약서 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·위임장 ·등기필증 ·도면(토지의 일부인 경·	확인서 <b>1</b> 통 통 통			
① 위 신청인 0	<b>2017</b> 년 <b>4</b> 월 <b>3</b> 일   대 백 <b>①</b> (2	전화 : <b>010-1234-5678</b> )		
<b>존</b> (또는)위 대리인		전화: <b>010-5678-1234</b> ) (전화: )		
서울중잉	<b>,</b> 지방법원 등기	<b> 국</b> 귀중		

삭2행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 등기신청안내서 - 지역권변경등기신청

## ■ 지역권변경등기란

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목적, 범위 등을 변경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며, 지역권설 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.

## ■ 등기신청방법

## ① 공동신청

지역권변경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지역권설정자와 지역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워칙입니다.

## 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## 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흑 사용하고, 벽지흑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## ① 부동산의 표시란

지역권의 목적부동산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표시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토지(임야)의 표시방법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##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변경계약"으로, 연월일은 지역권변경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

#### ③ 둥기의 목적란



"지역권변경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## ④ 변경할 사항란

변경할 지역권의 표시로 변경대상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변경할 등기의 내용을 계약내용에 따라 기재합니다.

#### ④ 범위란

범위는 승역지가 1필의 토지의 전부인가 또는 일부인가를 표시합니다. 1필의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으로 표시합니다.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의 전부이어야 합니다.

### ⑤ 둥기의무자란

지역권설정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 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 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 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## ⑥ 등기권리자란

지역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#### ⑦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#### 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#### ⑨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#### ⑩ 둥기의무자의 둥기필정보란

⑦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



서'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 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 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 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⑤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 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### ①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#### < 신청인 >

## 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#### ② 지역권변경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#### ③ 둥기필증

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 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

## ④ 도면(지적도)

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합니다. 도면은 인터넷 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,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(예:[등록문서번호: 100번])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. 단,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 < 시·구·군청 >

##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### 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## 둥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# く 등기과 · 소 >

#### 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## 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



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지역권변경계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